

##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웅진에너지 주식회사의 제 2 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출자전환 등 사채권자 집회 안건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며,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는 사채권자집회 결의 및 법원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10월 20일(金) 오전 10: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4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제 2 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사채권자
4. 회의 목적사항

의안	제 2 회(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
제 1 호 의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웅진에너지(주) 제 2 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이하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통지의 권한을 수탁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li> <li>2.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수탁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li> <li>3.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아래 각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전환사채 차환발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만기 이전에라도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변제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한다.</li> <li>4.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 인가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날부터 사채등록필증 원본 및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발행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는 사채총액의 100%를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리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li> <li>5. 제 4 항에 따른 신주의 발행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신주의 발행</li> </ol>

	<p>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한다.</p> <p>6.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 인가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날부터 사채등록필증 원본 및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발행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는 사채총액의 100%를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p> <p>7. 제 6 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환가액: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90%</li> <li>② 전환가액 조정사유: 시가 미만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현금 배당, 시가변동(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한도로 하향조정 가능)등</li> <li>③ 전환사채의 만기일: 2020년 12월 19일</li> <li>④ 전환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연 3% (만기상환: 만기시 지급하는 원금은 표면이자율을 포함하여 최대 105%범위 내에서 사채권자집회 결의시 확정한다.)</li> <li>⑤ 전환기간: 발행일 1년 이후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li> <li>⑥ 조기상환청구권: 발행회사에 한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li> <li>⑦ 기타 사채조건 및 청약방법, 필요서류: 발행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li> </ul> <p>8.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는 경우 본건 사채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이자(연체이자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본건 사채의 만기는 사채권자가 제 4 항 또는 제 6 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연장된다.</p>
--	--------------------------------------------------------------------------------------------------------------------------------------------------------------------------------------------------------------------------------------------------------------------------------------------------------------------------------------------------------------------------------------------------------------------------------------------------------------------------------------------------------------------------------------------------------------------------------------------------------------------------------------------------------------------------------------------------------------------------------------------------------------------------------------------------------------------------------------------------------------------------------------------------------------------------------------------------------------------------------------------------------

## 5. 소 집 자 : 우진에너지 주식회사

## 6. 제안의 이유와 참고사항

### 가. 제안이유

본건 사채의 만기가 2017년 12월 19일자로 도래 예정인바, 만기도래 이전에 본건 사채의 만기상환의 의무를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로 차환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법 제 491조 제 1항 및 상법 제 491조 제 2항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제 2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나. 참고사항

사채권자소집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WoongjinEnergy.com](http://www.WoongjinEnergy.com) →투자정보→사채권자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법 제 498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 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 합니다.

## 7. 공탁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집회 1 주간 전인 2017 년 10 월 12 일까지 상법 제 492 조 제 2 항 및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제 46 조에 따라 사채의 등록필증을 법원(시, 군법을 제외한 어느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가. 직접 또는 대리행사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나. 출석행사 시 지참서류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행사의 방법에 따릅니다.

- 직접행사 : ①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등록필증 사본  
③ 신분증
  
- 대리행사 : ①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등록필증 사본  
③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⑤ 본인 신분증의 사본  
⑥ 대리인의 신분증

###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 510 조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제 368 조 제 3 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분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9. 의결권 서면행사에 관한 사항

### 가. 서면행사

의결권은 상법 제 495 조 제 3 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나. 서면행사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별도첨부 참조)**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① 집회의 명칭과 일시, ② 사채권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③ 보유사채금액, ④ 각 의안별 찬반표시, ⑤ 사채권자의 기명날인이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행사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 다. 의결권 행사 시한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 원본, 등록필증 사본 및 신문증사본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일까지 하기의 명기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수탁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주) 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송부처: 150-7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엔에이치투자증권(주)빌딩 8 층  
General Industry 부 웅진에너지(주) 회사채 담당자

#### 라.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 각 의안결의시의 찬반투표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 결의의 인가와 효력

가. 사채권자집회에서 각 회차별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상법 제 498 조 제 2 항에 따라 제 2 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사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인가시까지 사채의 양도, 입질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상법 제 498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자금&IR 팀(042-939-8033,8034) 또는 수탁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02-768-7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광 수

『의결권행사서면(전면)』

##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귀중

## 제2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 사채권자집회 의결권 행사서면

사 채 권 자		주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보유사채금액	(원)	의결권 행사 사채금액	(원)

본인은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제2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 사채권자집회(2017년 10월 20일 오전10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4층 대회의실 개최 예정, 그 연회 또는 속회포함)의 각 의안에 대하여 상법 제49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해당란에 ○ 또는 ✓표 하십시오.

구 분	안건	찬성	반대	기권
제 1 호 의 안	1. 웅진에너지(주) 제 2 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 (이하 “본건 사채”)에 관한 사채권자 집회 (이하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 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통지의 권한을 수탁 회사인 엔에이치 투자 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2.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까지 의 사이에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원인 사유는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수탁 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3.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아래 각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전환사채 차환발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만기 이전 예라도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전환 사채의 발행으로 변제에 갈음 하는 방식으로 본 건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4.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인가 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날부터 사채등록필증 원본 및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발행 회사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는 사채총액의 100%를 발행회사 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출자 전환 대상사채 원리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5. 제 4 항에 따른 신주의 발행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신주의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p>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한다.</p> <p>6.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인가 결정 등으로 확정 되는 날부터 사채등록 필증 원본 및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발행회사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는 사채 총액의 100%를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p> <p>7. 제 6 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p> <p>① 전환가액: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90%</p> <p>② 전환가액 조정사유: 시가 미만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현금배당, 시가변동(발행 당시 전환가액 의 70% 한도로 하향조정 가능) 등</p> <p>③ 전환사채의 만기일: 2020년 12월 19일</p> <p>④ 전환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연 3% (만기상환: 만기시 지급하는 원금은 표면이자율을 포함 하여 최대 105%범위 내에서 사채권자집회 결의시 확정한다.)</p> <p>⑤ 전환기간: 발행일 1년 이후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p> <p>⑥ 조기상환청구권: 발행회사에 한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p> <p>⑦ 기타 사채조건 및 청약방법, 필요서류: 발행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p> <p>8.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는 경우 본건 사채 에 대하여 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연제이자 포함)가 발생 하지 아니하며, 본건 사채의 만기는 사채권자가 제 4 항 또는 제 6 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연장된다.</p>			
--	------------------------------------------------------------------------------------------------------------------------------------------------------------------------------------------------------------------------------------------------------------------------------------------------------------------------------------------------------------------------------------------------------------------------------------------------------------------------------------------------------------------------------------------------------------------------------------------------------------------------------------------------------------------------------------------------------------------------------------------------------------------------------------------------------------------------------------------------------------------------------	--	--	--

- 첨부 : 1. 사채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2. 사채등록필증 사본  
 3.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7. . .

사채권자

(인감)

※ 의결권 행사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누락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송부처 : 150-7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엔에이치투자증권(주)빌딩 8층

General Industry 부 웅진에너지(주) 회사채 담당자

## 『의결권행사서면(후면)』

**의결권행사서면 작성안내 및 주의사항**

1. 서면 투표용지에 사채권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보유사채금액, 의결권 행사 사채금액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채권자 확인 과정에서 기재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유사채금액은 등록필증 및 공탁서에 기재된 사채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소는 공탁서를 돌려드리기 위한 주소이므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공탁서를 받지 못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 행사 사채금액’ 란은 보유사채금액 중 일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만 행사할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고, 이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유사채금액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3.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기권 어느 쪽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찬반 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단 문자이외에 O, ✓ 또는 x 기타의 도형을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의결권행사로 간주합니다.
4. 개인인 경우에는 ①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등록필증 사본, ③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어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법인인 경우에는 ①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등록필증 사본, ③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어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의결권행사서면은 집회일 전일까지 사채관리회사인(150-7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엔에이치 투자증권(주)빌딩 8층 General Industry부 웅진에너지(주) 회사채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FAX는 인정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발송 후 도착하지 않았거나 그 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서면투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웅진에너지주식회사 자금&IR팀(042-939-8033,8034) 또는 사채관리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02-768-7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